

법인이용자에 대한 규정



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

법인이용자에 대한 규정

제정 2019년 8월 14일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(이하 ‘회사’ 라 함)의 법인이용자가 회사의 출입과 골프장과 각종 시설물(이하 ‘창원컨트리클럽’ 이라 함)을 이용·사용함에 따른 준칙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 (법인이용자의 정의) ‘법인이용자’ 라 함은 주주회원인 법인(法人)이 대표권 있는 자를 포함한 임직원 중 법인을 대신하여 창원컨트리클럽을 이용·사용토록 지정한 후 회사가 승인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 (법인이용자의 승인 방법) 법인의 법인이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회사는 주주회원에 준하여 정관과 ‘주주회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법인이용자로 승인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자격과 박탈)

① 제반 회사정관과 규정이 정함에 따라 주주회원인 법인이 지정한 그 임·직원은 우리 회사의 승인에 따라 우리 회사의 법인이용자가 될 자격을 가진다. 다만 우리 회사의 주주회원으로 있다가 징계를 당한 자 중 출입정지의 경우는 종료 후 5년, 제명인 경우는 10년이 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법인이용자가 될 수 없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임·직원이 지정된 경우 이를 특정하여 영구히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

법인이용자를 취득한 후에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③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제②항의 경우 그 결정을 한 후 그 다음 최초 이사회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그 결의 후 다음날로부터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.

제5조 (여성 법인이용자의 제한) 이는 우리 회사 ‘주주회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규정’ 제6조 각 조항을 준용한다.

제6조 (권리와 의무)

① 주주회원은 우리 회사의 골프장 시설물을 골프장 이용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회원이 성별, 나이, 직업, 직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우리 회사는 주주회원이 위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주주회원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의 주주임에 대한 자부심과 궁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7조 (법인이용자의 변경)

① 주주회원 법인은 법인이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 기준일(매월 첫날로 한다)을 정하여 변경신청을 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.

②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용자에 대한 절차는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회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규정’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이사회를 대신하여 진행한다. 다만, 준용 조항의 주주회원이란 법인이용자를 말한다.

③ 대표이사의 절차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표이사의 결정 후 10일내 이사회에 재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 (법인이용자의 이용권 제한)

- ① 법인이용자의 이용권 제한에 따른 징계는 주주회원에 대한 정관 및 관련 규정 준용하여 대표이사가 감사 1명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 (법인의 연대책임)

- ① 법인이용자의 이용권 제한에 따라 징계가 있는 경우, 그 징계는 법인에게 연대 귀속하여 법인에게 한 징계와 같다. 따라서 제명된 경우 법인이용권 수가 그 제명 수만큼 법인이용권수가 없어진다.
- ② 징계가 아닌 제4조에 따른 자격 박탈일 경우에 그 즉시 주주회원 법인에게 법인이용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우리 회사는 주주회원인 법인이 이를 변경신청하지 않음에 따른 우리 회사 면책규정을 반드시 삽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정관과 규정의 적용)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주주회원에 관한 우리 회사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